

Q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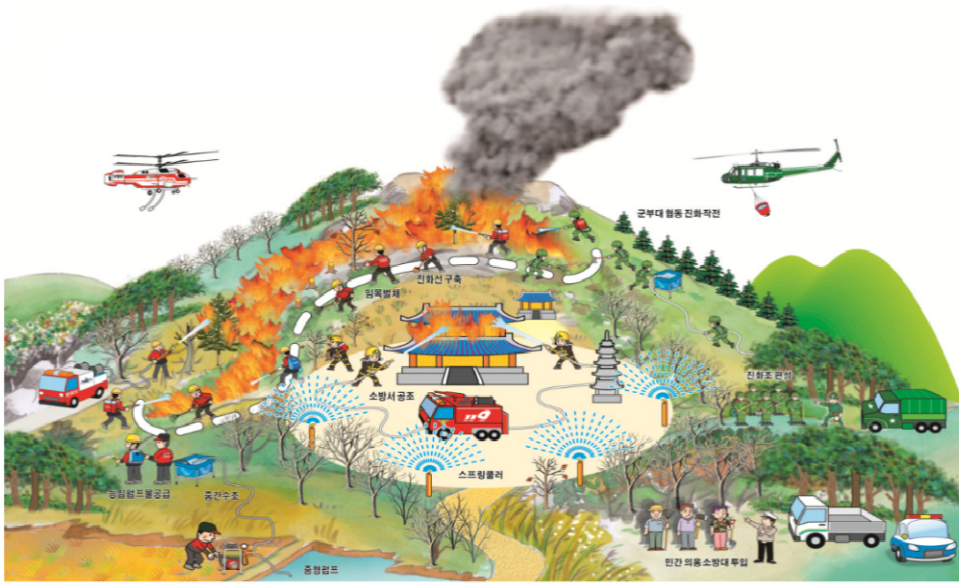
산불진화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업을 하고 있나요?

A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규정」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산불진화 유관기관은 국방부, 환경부(국립공원관리공단), 기상청, 경찰청, 소방방재청, 문화재청 등 6개 부처이며 「산림보호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때에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담당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
「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규정」 제21조(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)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산불진화 유관기관

| 소방청(소방관서) | 국방부(군부대)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방인원·소방차량·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- 가옥·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-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-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 조치 -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-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 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-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-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-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-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|
| 경찰청(경찰관서) | 기상청(기상대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화인력·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 자원의 지원 -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-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-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-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|
| 환경부(국립공원관리공단) | 문화재청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-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보호 대책의 강구 -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 상황 분석 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|



산불진화현장